

채광·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 복구 및 방지대책 추진

- 정부는 그동안 환경파괴 및 재해위험성이 제기되어 온 석회석광산 등 채광과 채석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, 금년 3월부터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작업을 추진키로 했다.
- 정부는 5일 행정자치부, 산업자원부, 환경부, 기획예산처, 국무조정실,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「채광·채석제도 개선 및 산림훼손 복구대책」을 마련,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산림법을 개정하여 채광·채석의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산림복구기준을 강화하였고, 앞으로 광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할 예정이다.
- 앞으로 채광·채석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재 평균 0.3ha~3ha와 10개월~3년으로 되어있는 허가면적과 허가기간을 각각 3ha와 3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,
- 산발적·소규모 채석을 방지하고 채석집중화를 위하여 채석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한편, 채석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업체의 무분별한 채석을 방지키로 했다.
- 아울러, 채광·채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복구기준을 새로 마련하고, 사업자가 부담하는 복구비 예치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토록 했으며
- 산림복구 이후 하자보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채광·채석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되 복구비의 분할예치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경감 하도록 할 예정이다.
- 정부는 또한 현재 복구명령 불응시 처벌조항이 없어 중단·방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련법을 제·개정하여 처벌조항을 강화·신설해 나가기로 했다.

- 한편, 정부는 채광·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11. 20~12. 9까지 3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복구 계획을 마련하여 동절기가 지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복구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- 훼손산림의 복구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지고 추진하되, 사업자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시·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예치금과 자체재원으로 추진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.